# 범죄피해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은 범죄피해자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할 권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를 배상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에서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당사자로서 참여할 경우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 및 구조에 대한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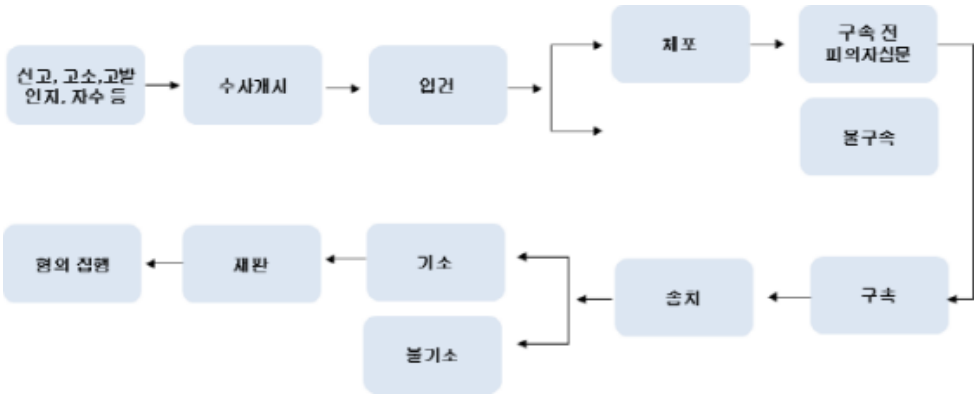
범죄피해자 ..... 1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 4
1.1.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 4
1.1.1.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4
1.2.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7
1.2.1. 각종 지원 ..... 7
2.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10
2.1. 범죄 발생 시 대처 ..... 10
2.1.1. 신고, 고소 및 고발 ..... 10
2.2.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12
2.2.1. 수사 관련 정보제공 등 ..... 12
2.2.2. 형사조정 ..... 15
2.3.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19
2.3.1.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 ..... 19
2.4. 배상 ..... 22
2.4.1.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 22
2.4.2. 배상명령 ..... 23
2.4.3. 손해배상 ..... 27
2.5.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30
2.5.1.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 30
3. 각종 지원 ..... 32
3.1. 지원요청 ..... 32
3.1.1. 시설지원 ..... 32
3.1.2. 생계비 등 지원 ..... 34
3.1.3. 주거지원 ..... 41
3.1.4. 법률지원 ..... 47
3.1.5. 긴급지원 등 ..... 52
3.2. 구조금 ..... 56
3.2.1. 유족구조금 ..... 56
3.2.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 60
3.2.3. 긴급구조금 ..... 64

#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 1.1.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 1.1.1.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형사소송절차도




#### 범죄 발생 시 대처

##### 신고, 고소 및 고발

▪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1항).

▪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 “신고”란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 ※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 ※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 ※ “피의자”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수사단계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사건접수배당 및 사건결정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1호·제2호,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경찰수사규칙」 제81조).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4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5조).

▪ 경찰 및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안전조치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 제21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8조,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77조 및 「경찰수사규칙」 제80조).

> ※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형사조정

▪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공판단계

▪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제1항).

▪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 및 제21조).

> ※ “공판”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배상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배상명령

▪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손해배상

▪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및 제462조).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및 제2조).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형집행단계

▪ 범죄피해자는 수용기관 등에 요청한 경우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6호, 제27조제6항 및 제28조제1항).

※ “형집행”이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1.2.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1.2.1. 각종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상담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의 종류**

**시설지원**

▪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보호시설에서 상담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

▪ 강력범죄 등 중한 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피해자는 사건발생 초기 단계에서 각 경찰관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 또는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부터 상담 및 맞춤형 지원정보를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생계비 등 지원**

▪ 일정한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주거지원**

▪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범죄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법률지원**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따른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 “국선변호사”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긴급지원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조).

▪ 긴급지원에는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등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을 직접 지원받거나, 민간기관·단체로부터 상담정보 등을 제공받는 지원이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참조).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이사)지원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조).

※ "중대범죄"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5항).

※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7항).

※ "이전비"란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8항).

## 구조금

### 유족구조금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제25조 참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장해 및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제25조 참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참조).

### 긴급구조금

▪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직권 또는 구조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구조피해자는 긴급구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

## 2.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 2.1. 범죄 발생 시 대처

#### 2.1.1. 신고, 고소 및 고발

**범죄신고**

**범죄신고 접수**

▪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다음의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내용 | 신고번호 |
|---|---|---|
| 경찰청 | 각종 범죄 | ☎ 112(국번없음) |
| 공소청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br>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 범죄 등 | ☎ 1301(국번없음) |
| 117신고상담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 ☎ 117(국번없음) |

> ※ “신고”란 법령에 따라 국가 및 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범죄신고 처리**

▪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이라 함)는 범죄 피해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1항).

> “사법경찰관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과 수사를 보조하는 경사, 경장, 순경 등의 사법경찰리를 총칭하는 말입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

▪ 경찰은 신고자가 구술로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 피해신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신고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거나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47조제3항).

**고소**

**고소권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범죄 발생 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 제226조 및 제227조).

- 범죄피해자

-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함)
- 범죄피해자의 친족(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친족 또는 자손

> ※ “고소”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 고소의 기간

▪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본문).

> ※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 범죄피해자, 그 밖의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고소의 기간을 계산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단서).

### 고소의 방법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Q.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 A.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함)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출처: 공소청-참여민원-자주 묻는 질문>

### 고소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 그러나 가정폭력 및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 고소의 취소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 제237조 및 제239조).

▪ 범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송치 전에 한함)에게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237조 및 제239조).

#### 사건처리

▪ 검사가 고소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발

#### 고발권자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용어사전>

#### 고발의 방법

▪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고발의 제한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

#### 고발의 취소

▪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39조).

#### 사건처리

▪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38조 및 제245조의5 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 2.2.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2.2.1. 수사 관련 정보제공 등

### 수사 관련 정보제공

####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위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 사법경찰관리(이하 “경찰”이라 함):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시
- 검사: 사건 처분 시

▪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이거나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요청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진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8조).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항).

> ※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수사 참여 등

### 참고인으로 진술

▪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 “참고인”이란 일반적으로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조사 및 동행 시 유의사항

▪ 범죄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 경찰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권위적 태도, 불필요한 질문 등으로 범죄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 성폭력 사건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 경찰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는 등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피의자와 분리하여 조사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

▹ 경찰은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가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등의 사유로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79조제2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5항 및 제6항).

▪ 범죄피해자 동행 시 유의사항

▹ 경찰은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자를 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78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1조).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면담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4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4조제2항).

### 진술조력인의 참여

▪ 경찰 또는 검사는 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범죄피해자가 19세 미만 피해자등인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직권이나 범죄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 ※ 진술조력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 및 지원-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시 절차-수사 및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심문 방청

▪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심문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단서).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30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제2항 및 「경찰수사규칙」 제80조).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외출·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신변경호
- 임시숙소 제공
-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비상연락망 구축 등 그 밖의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공소청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

▪ 검사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CD, 비디오테이프 등)은 사건기록과 분리·밀봉하여 사건기록 말미에 첨부하는 등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3항).

#### 정보보호 조치

▪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성명, 연령, 주거지, 직업, 용모 등 범죄피해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77조).

▪ 검사는 피의자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체포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3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조제2항의 범죄로 수사(검사에게 사건이 송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포함함) 중에 있는 사건의 범죄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해 그가 범죄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신고인·고발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2.2.2. 형사조정

> 형사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소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조정이란?

### 형사조정의 개념

▪ “형사조정”이란 피의자 및 범죄피해자(피고소인, 범죄피해자인 고소인을 포함, 이하 “당사자”라 함)간 형사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조).

## 형사조정 회부

### 형사조정의 회부권자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1항).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사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및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3조제1항).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1.에서 3.까지에 준하는 사건

###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는 사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제2항 단서).

-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 ※ “불기소처분”이란 법령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며,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
> ※ “기소유예처분”이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여건이 구비되었으나 여러 가지 형사정책상의 고려에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
> ※ “각하”란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및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형사조정 절차

### 형사조정 회부 결정

▪ 당사자의 의사확인

▹ 검사는 형사조정 회부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제도의 취지와 사건진행 예정사항을 설명하고, 형사조정 회부 의사를 확인합니다. 형사조정 회부를 원하는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형사조정신청서 작성을 위한 출석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조정회부동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1조).

▹ 형사조정 회부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는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

▪ 검사가 접수한 형사사건

▹ 검사가 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사안의 경중, 혐의유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제1항).

▹ 검사는 사건 배당일부터 2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제2항 본문).

▹ 검사가 1회 이상 당사자를 면담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담일부터 1개월 이내에도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제2항 단서).

▪ 송치된 고소사건의 형사사건

▹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제1항).

▹ 검사는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부터 각 2개월 이내에 형사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제2항 본문).

▹ 검사가 1회 이상 당사자를 면담 또는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종 면담일 또는 조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도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5조제2항 단서).

▪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

▹ 검사가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을 배당받은 경우 혐의유무,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송치된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송치 전에 형사조정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다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없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9조제1항).

### 형사조정기일 통지

▪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의 방법은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 및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9조제2항 참조).

### 형사조정의 진행

▪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 관련 자료의 제출 등

▪ 관련 자료의 제출

▹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기일 전날까지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제3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 관련 자료의 열람 동의 등

▹ 형사조정위원회는 관련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구두로 받은 경우는 형사조정조서에 기재)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5조제5항).

## 형사조정 종료

### 형사조정이 성립된 경우

▪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형사조정조서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형사조정결정문으로 작성하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2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table>
<tr><th>사건구분</th><th>형사조정 성립 방법</th><th>사건처리 방법</th><th>예외적 처리</th></tr>
<tr><td rowspan="2">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및 송치된 고소사건</td><td rowspan="2">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 작성</td><td>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td><td>-</td></tr>
<tr><td>그 외 사건: 각하 처분</td><td>범죄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br>수사 진행<br>(처벌 시 감경할 수 있음)</td></tr>
<tr><td>일반형사사건 (고소사건 제외)</td><td>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작성</td><td>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종국처분</td><td>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br>감경처분</td></tr>
</table>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검사와 협의하여 형사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회송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4조).

▪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됩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2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2항).

| 구분 | 사건처리 방법 | 예외적 처리 |
|---|---|---|
| **검사가 접수한 고소사건** | 수사 진행 | 각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이 명백하거나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이 확인된 경우:<br>불기소 또는 기소중지 |
| **송치된 고소사건 및 일반형사사건 (고소사건 제외)** | 수사 진행 | - |

### 2.3.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 2.3.1. 공판 관련 정보제공 등

**공판 관련 정보제공**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범죄피해자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처분 시에 위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단서).

▪ 검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이거나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 ※ “공판”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 범죄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면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처분 결과를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항).

### 공판기록 열람·복사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 범죄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범죄피해자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

▪ 재판장은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3항).

▹ 복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복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4항).

> ※ “심리”란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공판 참여 등

### 증인으로 진술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 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함)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범죄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들에게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9조).

▹ 범죄피해자 등이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해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피해자 등이 증인으로 신청하여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4항).

> ※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5조의2제1항).

  ·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피해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범죄피해자

  ·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함)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제1항).

-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 범죄피해자의 직계친족
- 범죄피해자의 형제자매
- 범죄피해자의 가족
- 범죄피해자의 동거인
- 범죄피해자의 고용주
- 범죄피해자의 변호사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법원은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 신변보호 등

### 신변보호 조치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지원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의뢰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

▪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의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 주거지 또는 현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3항).

#### 정보보호 조치

▪ 검사는 공소장 작성 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사실 특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7조제2항).

- 범죄피해자의 성을 제외한 이름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는 범죄장소의 구체적 지번, 건물번호, 공동주택의 동 호수 등 상세한 주소
- 범죄피해자의 직업, 근무처 등 그 밖의 신상정보를 노출할 우려가 있는 사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2조제2항의 범죄로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범죄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해서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범죄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속기록 등 사본 교부 제한

▪ 재판장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 2.4. 배상

### 2.4.1.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 합의 사실 기재신청의 요건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형사사건과 관련된 범죄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같음)에 관해 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 ※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민사상 다툼에 관해 화해가 성립한 경우를 “형사절차에서의 화해”라고 칭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 피고인과 범죄피해자는 그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피고인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사람이 범죄피해자에 대해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면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의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사람은 피고인 및 범죄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2항).

#### 합의 사실 기재신청 방법

▪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을 하려면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합의 사실의 기재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

#### 형사절차에서의 화해 효력

▪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5항).

### 2.4.2. 배상명령

#### 배상명령이란?

#### 배상명령의 개념

▪ "배상명령"이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법원 전자소송포털-형사소송 절차안내).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근거법령 | 범죄의 종류 |
| --- | --- |
| 「형법」 |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상습범 포함)<br>·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상습범 포함)<br>·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중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또는 중상해죄·존속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br>·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제1항)<br>·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br>·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장)<br>·강간 및 추행죄(「형법」 제32장)<br>·절도 및 강도죄(「형법」 제38장)<br>·사기 및 공갈죄(「형법」 제39장)<br>·횡령 및 배임죄(「형법」 제40장)<br>·손괴죄(「형법」 제42장)<br>·위의 죄 중 가중처벌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br>·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br>·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br>·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br>·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br>·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및 제15조)<br>·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및 그 미수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및 제15조)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br>·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br>·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br>·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 법원은 위의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항).

###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건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 범죄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신청

### 배상신청의 통지

▪ 검사는 위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 배상신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배상신청서,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배상신청서 부본(副本) 및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가능)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

▪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 범죄피해자 및 그 상속인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7항).

### 배상신청의 취하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6항).

> ※ “취하”란 법원에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배상신청의 각하

▪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

## 배상명령 선고 등

### 배상명령의 선고

▪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며,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하는 방법으로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1항제2항).

▪ 법원은 배상명령을 가집행 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3항).

> ※ “가집행선고”란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을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배상명령을 한 경우 유죄판결서의 정본을 피고인과 범죄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제5항).

### 배상명령의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범죄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 배상명령 이심(移審) 등

### 배상명령의 이심

▪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형사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 배상명령의 취소 등

▪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형사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때에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하는데,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2항).

> ※ “면소판결”이란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의 면제를 선고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 “공소기각”이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을 말합니다.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명령을 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더라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 2.4.3. 손해배상

####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 소액사건심판의 절차

▪ 소액사건심판의 제기

▹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대리할 수 있음)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구술로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8조제1항).

▪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

▹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액사건심판의 효력

▪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 지급명령의 개념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지급명령의 절차

▪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관할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464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7조)

√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민사소송법」 제8조)

√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지급지(「민사소송법」 제9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12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행위지(「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 지급명령 송달

▹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9조제1항).

### 지급명령의 효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 피고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지급명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의 개념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및 제2조).

### 민사조정의 절차

▪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제2항).

▪ 민사조정기일 통지

▹ 민사조정기일은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5조제1항제2항).

▪ 민사조정 성립

▹ 민사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 민사조정의 효력

▪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다음의 경우에 민사조정을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제36조제1항).

▹ 민사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 민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 민사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 민사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민사조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 민사소송의 개념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민사소송의 절차

▪ 소장의 제출

▹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제1항).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피고의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변론

▹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재판장, 수명법관, 변론준비절차의 진행을 위해 촉탁받은 판사는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4항, 제281조제1항 및 제282조제1항).

▹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 민사소송의 효력

▪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 ※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의 < 민사소송의 절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5.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2.5.1.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 형집행 관련 정보제공

#### 정보제공의 요청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요청한 경우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은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 ※ “형집행”이란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에게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기관의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 < 출처: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 제공되는 정보

▪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이 제공해야 하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1항 본문 및 제25조제5호·제6호).

| 통지의 종류 | 통지의 내용 |
|---|---|
| **형집행상황 통지** | 형집행정지, 가석방일자, 자유형의 집행종료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상황,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형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 여부 |
| **구금상황 통지** |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일자 및 구금장소, 구속적부심사·구속취소·보석·구속집행정지 등에 의한 석방일자 등 신병에 관한 상황 |

### 정보제공의 방법

▪ 형사절차 정보의 제공은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8조제1항).

### 정보제공의 제한

▪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항).

## 3. 각종 지원

### 3.1. 지원요청

#### 3.1.1. 시설지원

**상담**

**상담기관의 종류 및 이용**

-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
| 일반범죄 | 공소청 피해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01 |
| |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1577-1295 |
| | 경찰민원24 | 국번없이 182 |
| 가정폭력범죄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 | 한국남성의전화 | 02-2653-1366 |
| | 한국여성의전화 | 02-2263-6464, 6465 |
| | 가족센터 | 1577-9337 |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 성범죄 |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
|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 |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5801 |
| | 한국여성의전화 | 02-2263-6464, 6465 |
|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02-335-1858 |
| | 해바라기센터 | 전국 센터 전화번호 검색 가능 |
| 아동학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전국 아동보호 센터 전화번호 검색 가능 |
|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 학교폭력 | 도란도란 | 온라인상담 및 문자상담 가능(117) |
| |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 국번없이 117 |
| | 청소년 1388 | 국번없이 1388 |

### 피해자보호팀의 지원

▪ 강력범죄, 교통사망사고 등 중한 범죄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범죄피해자 및 경미범죄라 하더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이주여성 등 피해자 사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는 피해자보호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4조).

▪ 피해자보호팀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초기상담 및 정보제공, 각종 지원안내 및 유관기관·단체 연계, 피해회복 과정 확인 등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5조 및 제36조).

▪ 범죄피해자는 언론기관의 취재 및 보도 등으로 명예 또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피해자보호팀으로부터 언론기관과의 접촉에 대해 조언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6조).

▪ 범죄피해의 경중, 피해자의 상태 등으로 보아 심리평가나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및 그 밖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범죄피해자는 정신적 피해의 회복·경감을 위해 피해자보호팀을 통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3항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

### 보호시설

####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을 설치·운영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 전단).

#### 보호시설의 입소

▪ 범죄피해자 중 집중적인 심리치료나 임시 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사, 경찰관서의 장,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추천한 사람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그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가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1조제2항).

#### 보호시설의 퇴소

▪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소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 보호시설 안에서 중대한 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보호시설 운영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 3.1.2. 생계비 등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공소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경제적 지원의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타인의 범죄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이하 “경제적 지원”이라 함)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조제1항).

1. 방화죄, 실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의 죄(「형법」 제13장, 제24장부터 제26장까지, 제28장, 제29장, 제31장, 제32장 및 제36장)
2. 강도죄(상습죄 포함), 특수강도죄(상습죄 포함), 준강도죄, 인질강도죄(상습죄 포함),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해상강도죄(상습죄 포함함) 및 미수죄(「형법」 제333조부터 제342조까지)
3.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폭행, 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형법」 제88조, 제124조, 제125조, 제136조, 제144조)
4.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서 1. ~ 3.의 각 범죄를 가중처벌죄 및 그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죄
5. 그 밖에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 위의 범죄피해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제2항).

- 범죄피해자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위법성이 있는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포함)에서 발생한 경우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인 경우[다만, 범죄피해자 본인과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피해자 사망 시 그 유족)는 외국인 등록을 마쳤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이어야 함]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범죄피해의 확대와 관련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경제적 지원의 실질적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 지원 요건 및 범위

### 경제적 지원의 요건 및 범위

▪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요건 | 지원범위 |
|---|---|---|

| | | |
|---|---|---|
| **치료비** |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8조) |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의 회복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 포함)을 지원하되,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음(「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제1항)<br>-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하되, 해당 범죄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치료비는 지원하지 않음(「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제3항) |
| **심리치료비** | -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입어 원활한 치료, 신속한 생업 복귀,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정신건강치료, 심리상담, 정서치료 등과 같은 명목의 정신건강치료 또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3조제1항 본문)<br>-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전문가가 실제 범죄피해자를 상담한 경우에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3조제2항) | -의료기관의 정신과 치료의 경우에 치료비 실비를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4조제1항 본문)<br>-범죄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피해 1건에 따른 치료비는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의 한도에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3항)<br>-심리치료비의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1회당 다음의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4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br>1.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10만원<br>2.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7만원<br>3. 1. 및 2. 외 정서치료 등과 같은 명목의 심리상담 서비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5만원 |

| | | |
|---|---|---|
| **생계비** | 1.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상당기간 경제적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근로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제1항제1호)<br>2. 생계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던 범죄피해자 본인의 사망으로 유족인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제1항제2호)<br>3. 그 밖에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제1항제3호)<br>(다만, 범죄피해자에게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친족 등이 있고 또한 그가 충분한 부양을 제공할 수 있는 때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범죄피해자에게 70만원을 상한으로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본문)<br>-다만,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상한은 2명 가족의 경우 120만원, 2명을 초과하는 추가 1명당 40만원씩을 증액한 액수로 하고,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음(「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8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단서) |
| **학자금** |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원 또는 재학 중(3개월 이내에 재원 또는 재학 예정임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인 경우로서 생계비 지원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제2항) | -1명마다 학기당 1회씩 최대 2회까지 학자금 지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9조제1항)<br>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생: 30만원<br>2. 초등학생: 50만원<br>3. 중학생: 80만원<br>4.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만원(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위 금액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 **장례비** | -범죄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유족인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의2) | -범죄피해자인 유족에게 장례실비를 지급하되, 사망한 범죄피해자 본인 1명당 최대 500만원을 상한으로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조제1항) |
| **긴급생활안정비** | -생계비 지원대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범죄로 범죄피해자 본인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한 경우(「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7조의3) | -범죄피해자에게 350만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0조의2제1항) |

## 지원 절차

### 경제적 지원의 신청

▪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경제적 지원 절차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조제1항).

▹ 다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또는 아동이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아동학대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절차 기한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4조제2항).

▪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5조제1항·제3항 및 별표 2).

| | 공통서류 | 증빙서류 등 |
|---|---|---|
| 치료비 |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별지 제1호서식)<br>• 주민등록증의 사본 등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br>• 피해자 본인이 아닌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본인과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 하는 범죄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br>• 지원금을 수령할 통장의 사본 등 계좌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통원 및 입원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관련 영수증<br>• 치료일수가 명시된 상해진단서<br>• 범죄피해자가 작성한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 |
| 심리치료비 | | • 진단서, 심리검사지 등 범죄와 심리적 피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서류<br>• 치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관련 영수증<br>•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증, 상담일지 사본, 비용청구내역서 등 |
| 생계비 | |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br>•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 부양 및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학자금 | |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br>• 재학증명서 등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br>•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해자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장례비 | | • 장제 관련 비용 영수증 일체<br>• 범죄피해자가 작성한 치료비, 장례비 환수 및 대위행사 확인서 |
| 긴급생활안정비 | | • 치료일수가 명시된 상해진단서<br>•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급여내역서 등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br>•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생계, 부양 및 친족관계를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경제적 지원의 결정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에게 긴급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 개시 3근무일 이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에 대해서는 절차 개시 당일 경제적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0조제1항 단서).

1. 범죄로 인해 범죄피해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장례비
2. 심의대상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평소 생계곤란을 겪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의 생계비
3. 위 1. 및 2.에 준하여 범죄피해자에게 즉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경제적 지원금

▪ 범죄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등 범죄피해자 본인이 아닌 여러 명의 범죄피해자가 경합하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한 경우 그 범죄피해자가 평소 범죄피해자 본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동거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지원 필요성이 보다 큰 사람을 경제적 지원의 우선순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범죄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류 기한을 정하여 지원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범죄로 인한 피해인 것은 인정되나 현재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지원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해자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다른 제도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 등이 제공될 것인지 여부가 심사·검토 중에 있고, 경제적 지원에 비해 위 지원금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더 유리하며, 실제 위 지원금 등이 제공된다면 경제적 지원과 중복 지원하는 것이 되는 경우

▹ 그 밖에 경제적 지원의 결정을 보류할 필요성이 큰 경우

### 경제적 지원금 지급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가 해당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지원결정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범죄피해자 또는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기관·시설·사람의 계좌로 그 금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3조).

▹ 경제적 지원을 받을 범죄피해자가 의사무능력자 또는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또는 제한능력자를 사실상 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다만, 그 사람이 가해자이거나 범죄행위를 유발한 책임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4조).

▹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심리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상담 전문가의 계좌로 그 금원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6조).

### 경제적 지원의 제한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또는 다른 법령·제도에 따라 받은 경제적 지원(심리치료비는 제외) 보전 명목의 금전이 있는 경우 그 액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지급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받은 금액이 전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받은 금액의 일부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29조제4항, 제38조제5항, 제39조제2항,제40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2항).

## 지원 환수

### 경제적 지원의 환수

▪ 범죄피해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았다는 사실 또는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환수를 결정하며,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고, 경제적 지원 상당액을 환수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19조제1항·제2항).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잘못 지급되었으므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경제적 지원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공소청에 임의 변제해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조정)

▹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경제적 지원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

**경제적 지원의 특별환수**

▪ 범죄피해자가 공소청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은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과 같은 명목으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은 경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는 환수를 결정하며,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고, 이미 지원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2조제1항 본문·제2항).

▹ 범죄피해자가 치료비 지원 이후에 가해자로부터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 받았으므로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환수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

▹ 정해진 기한 내에 잘못 지급된 치료비 상당액을 이를 지급한 공소청에 임의 변제해야 한다는 점(다만, 기한은 원칙적으로 2개월을 부여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조정)

▹ 임의변제하지 않을 경우 범죄피해자가 지급받은 치료비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심의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치료비의 지급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 환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2조제1항 단서).

### 3.1.3. 주거지원

>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에 관한 구체적 문의는 공소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1600-1004)에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지원**

**지원 요건[「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법무부공고 제2025-207호, 2025. 6.), p.2~6].**

▪ 범죄피해자일 것

▹ 범죄피해자와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기존 주거에서의 생활이 부적절할 것

▹ 범죄로 인해 주거를 상실한 경우

- 주거지가 범죄현장이거나 그 인근이어서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해 거주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주거지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해 범죄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닐 것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주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아닐 것

▪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거나 피해자가 지원받은 주거에서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주거지원의 이익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을 것

▪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종류 | 월평균소득 및 선정순위 |
|---|---|
| 50㎡ 미만 |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br>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br>제1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br>제2순위 :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br>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50㎡ 이상<br>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br>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br>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br>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br>제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br>제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br>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지원 내용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21㎡~59㎡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7).

### 지원 절차

▪ 국민임대주택 지원 절차도(「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0)




▪ 범죄피해자 확인증 신청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신청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8, 19).

√ 주거지원 신청서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소득확인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그 밖의 입증 서류

▪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8~9).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범죄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국민임대주택 신청

▹ 범죄피해자는 발급받은 범죄피해자 확인증을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9, 19).

√ 국민주택임대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및 도장

▪ 국민임대주택 입주 계약

▹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계약을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9).

√ 주민등록등본 1부(국민임대주택 신청 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제출해야 함)

√ 계약금

√ 신분증 및 도장

##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 지원 요건(「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5)

▪ 위 국민임대주택의 지원요건과 동일

▪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공급 요건을 충족할 것(「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제2항)

▹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포함),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다만, 이 경우 3개월 이상 노숙인시설에 등록된 사람을 포함), PC방, 만화방, 컨테이너 및 움막,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지하층과 홍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한 지하층, 옥탑방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범죄피해자(거주기간은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일 것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범죄피해자일 것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일 것
- 위에 해당하는 범죄피해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가구원수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
| 1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 2인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
| 3인 이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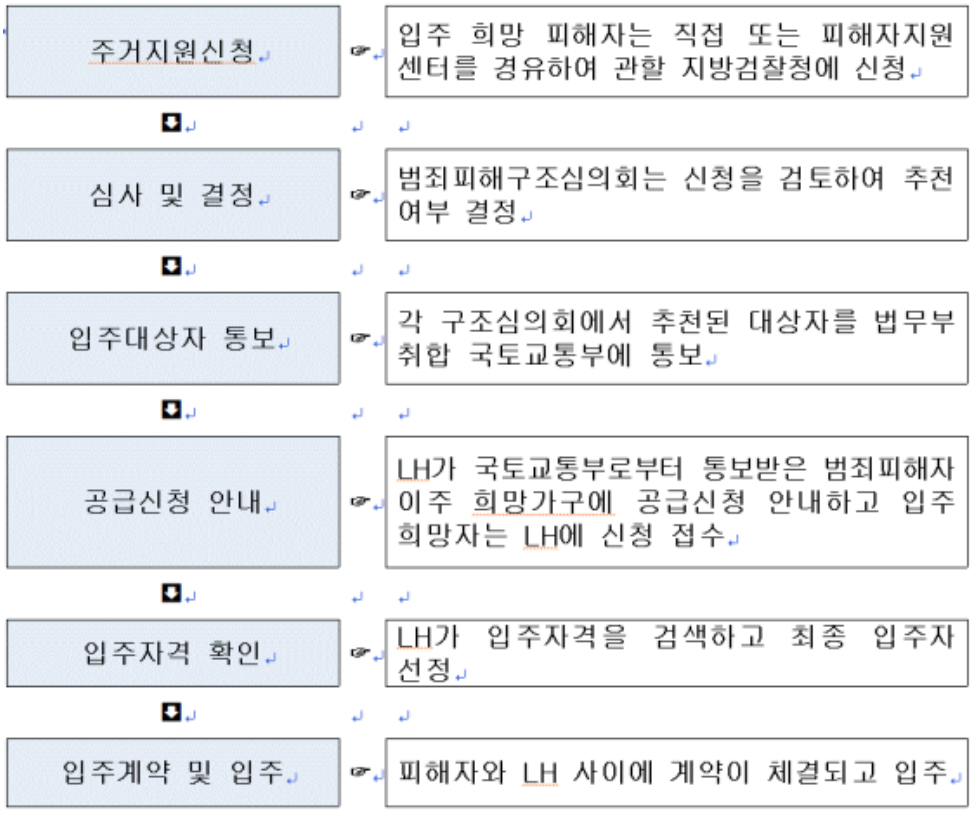
### 지원 내용

▪ 위의 기준을 충족한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5).

| 구분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
|---|---|---|
| **임대보증금** | 공급주택에 따라 상이 | 전세지원한도액(수도권은 13,000만원, 광역시는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내 전세금의 5% |
| **월 임대료** |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월세 환산액 | 지원 금액에 대한 기금 대출이자(연 1~2%) |
| **지원대상 주택** |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LH 보유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가구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br>※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 지원 절차

▪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 절차도(「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8)




▪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추천 신청

▹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를 원하는 범죄피해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종합민원실이나 각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지원추천을 신청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9).

√ 주거지원 신청서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소득확인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이 가능한 그 밖의 입증 서류

▪ 입증 자료의 제출

▹ 범죄피해자는 범죄 피해와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6, 17).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등(범죄피해자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피해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망진단서,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재산상 피해의 경우 견적서 등)

√ 그 밖에 주택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매입·전세 임대주택 신청

▹ 국토교통부로부터 매입·전세 임대주택 지원을 통보받은 범죄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입·전세 임대주택을 신청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9).

√ 국민주택임대 공급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확인 증명서류 및 건강보험증 사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신분증 및 도장

▪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 계약

▹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계약을 합니다(「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p.19).

√ 주민등록등본 1부(매입·전세 임대주택 신청 시와 변동된 경우에 한해 제출하며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씩 제출)

√ 계약금

√ 신분증 및 도장

### 3.1.4. 법률지원

#### 법률상담

##### 법률상담 대상

▪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0조).

##### 법률상담 방법

▪ 법률상담은 면접, 서신, 전화, 사이버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2조제1항).

> ※ 전화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법률홈닥터(☎ 02-2110-4253)에서 받을 수 있으며, 방문상담 및 사이버상담에 대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 여부 등 결정

▪ 법률상담을 한 직원은 그 상담결과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다른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피해자를 해당 지부 등 또는 다른 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2조 및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2조제2항·제3항).

#### 법률구조

##### 법률구조란?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여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법률구조 안내>).

### 법률구조 대상

▪ 법률구조 대상자

▹ 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5조제2항).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사람에 한함)
2.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3. 농업인과 어업인(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 포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5.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
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이사장이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피해자 및 그 유족
7.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구조결정 또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사건의 신청인(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 제외)
9.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10.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 상의 피수용자 포함)
11.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사건의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12.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 법률구조 절차

▪ 법률구조 처리절차도

▹ 민사, 가사사건 처리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개요 및 절차]




▹ 형사사건 처리절차[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법률구조-법률구조안내-개요 및 절차]




▪ 법률구조 신청

▹ 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이하 “의뢰자”라 함)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의 서류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및 지소에 제출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7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 법률구조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1부(주민등록증사본 등 의뢰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률상담 의뢰사건 또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 법률구조에 회부된 사건은 법률구조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뢰자에게 법률구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7조제4항).

▪ 사실 조사

▹ 법률구조 신청사건에 대해 지부장, 출장소장 및 지소장(이하 “지부장 등”이라 함)은 지체 없이 지부 등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조사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조사담당변호사”라 함)를 지정하며, 그 조사담당변호사는 법률구조 요건에 관해 다음의 사실을 일정한 방법으로 조사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

| 조사사항 | 조사방법 |
| --- | --- |
|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 해당 여부<br>·승소가능성 및 승소가능금액<br>·승소 후 집행가능성<br>·법률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br>·관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뢰자의 진술청취<br>·의뢰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br>·참고인의 진술청취<br>·형사기록 등 관련기록의 열람 및 등사<br>·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등의 촉탁<br>·상대방의 진술청취 등 그 밖의 적정방법 |

▪ 구조여부 결정

▹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9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1항·제3항).

| 사건의 종류 | 구조결정 |
| --- | --- |
| 민사사건 등 및 형사사건 | 조사담당변호사는 사실조사를 완료하여 법률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지부장 등이 법률구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구조결정을 함 |
| 국선대리사건 |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법률구조가 결정된 것으로 봄 |
| 법원소송구조사건 |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니거나 법률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해야 함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 기각결정을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9조제2항, 제45조제2항).

√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 그 밖에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법률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형사사건인 경우는 제외)

▹ 법률구조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민사사건 등의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형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19조제6항 및 제45조제11항).

▪ 수임변호사 지정

▹ 지부장 등은 소송구조를 결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소송수행을 담당할 변호사(이하 “수임변호사”라 함)를 지정해야 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45조제4항 본문).

▹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해당 사건의 수임변호사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45조제4항 단서).

▪ 법률구조 계약

▹ 수임변호사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의뢰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6조 본문 및 제49조).

▹ 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에는 지부장 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대리하여 수임변호사 및 의뢰자의 3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합니다(「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6조 단서 및 제49조).

### 법률구조 중단

▪ 수임변호사는 소송구조결정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구조 중단을 요청하며, 구조 중단의 요청을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 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1항·제2항).

▹ 의뢰자가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 의뢰자가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 의뢰자가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 그 밖에 사정변경으로 법률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 된 때

▹ 의뢰자가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또는 검사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3항 전단 및 제45조제8항).

▪ 해당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법원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조결정을 취소하거나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종결된 경우에는 구조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29조제4항 전단).

## 국선변호사 선정

### 국선변호사 선정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인신매매등범죄, 직접적인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제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제1호).

> ※ 국선변호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자-성폭력 피해자의 지원-법률지원 및 긴급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1.5. 긴급지원 등

※ 긴급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 긴급지원의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함)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5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 긴급지원의 종류 및 범위

▪ 범죄피해자는 다음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 종류 | 내용 |
| --- | --- |
|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지원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br>·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br>·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br>·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br>·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br>·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br>·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

### 긴급지원의 절차

▪ 긴급지원 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 현장 확인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제3항).

▪ 적정성 심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 긴급지원의 환수

▪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긴급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제2항·제3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

▹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긴급지원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함)

> ※ 긴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긴급복지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의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의 범죄신고자, 친족 또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동거인 그 밖에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범죄피해자 등”이라 함)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조 및 제2조제3항).

> ※ "중대범죄"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소정의 특정범죄,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아동학대 범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범죄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5항).
>
> ※ "보복을 당할 우려"란 범죄피해 진술 및 범죄신고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6항).
>
> ※ "위치확인장치"는 위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간편한 조작을 통해 112 상황실 긴급신고와 현장출동을 위한 위치확인이 가능한 기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7항).
>
> ※ "이전비"란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2조제8항).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의 지원신청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신청

▹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신청인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해당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공소청에 제출하여 위치확인장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5조제1항, 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

| 신청권자 | 제출서류 |
|---|---|
| 범죄피해자 등 | ·위치확인장치 지원신청서<br>·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동의서<br>·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서 |
| 검사 및 경찰 | 위의 서류를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출하게 함<br>(범죄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 이전비의 지원신청

▹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그 범죄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학교폭력사건 중, 형사 입건되지 않았으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음의 서류를 해당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기소한 관할 공소청 피해자지원담당자에 제출해 이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5조, 제16조 및 별지 제11호서식).

| 신청권자 | 제출서류 |
|---|---|
| **범죄피해자 등** | · 이전비 지원신청서<br>·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정 관련 서류, 이전비 관련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br>· 견적서(사전에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 **검사 및 경찰** | 위의 서류를 범죄피해자 등에게 제출하게 함<br>(범죄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의 지원결정

▪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결정

▹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담당검사는 지원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7조제1항).

▪ 이전비의 지원결정

▹ 범죄피해자 등이 이전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담당검사는 이전비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7조제1항).

## 위치확인장치 사용 및 반납

▪ 위치확인장치의 사용

▹ 위치확인장치 사용기간은 위치확인장치가 지급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하며, 보복의 위험이 현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기간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8조).

▪ 위치확인장치의 반납

▹ 피해자지원담당자는 위치확인장치의 사용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범죄피해자 등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연장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확인장치를 반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1조제1항).

▹ 위치확인장치를 제공받은 범죄피해자 등이 위치확인장치의 지원기간이 만료되거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반납하는 경우에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받고 위치확인장치 사용 관련 서비스를 종료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담당검사는 범죄피해자 등의 사망, 이민, 구속, 가해자 측과의 합의 등으로 보복의 위험이 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위치확인장치 사용 시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에 직권으로 반납을 요청하여 위치확인장치 반납 확인서를 제출받고, 위치확인장치 지원 관련 서비스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1조제3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이전비 지급

▪ 이전비 지원결정이 있을 경우에 이전비를 실비로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 제18조 및 제19조).

## 3.2. 구조금

### 3.2.1. 유족구조금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소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구조금이란?

#### 유족구조금의 개념

▪ "유족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며,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4호).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열거된 순서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되며,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4항).

-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 유족구조금 신청

### 유족구조금의 지급신청

▪ 유족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표시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 유족구조금의 재심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 기각된 경우 포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 유족구조금 지급

### 유족구조금 지급액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함)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 유족의 범위 | | | 산정 기준 개월 수 |
|---|---|---|---|
| 1. 구조피해자의 배우자<br>[사실상 혼인관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함) 포함] | | | 48개월 |
|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유족 | 자녀 | 25세 미만 | 48개월 |
| | | 25세 이상 | 28개월 |
| | | 장애인 | 48개월 |
| | 부모 | 60세 이상 | 36개월 |
| | | 60세 미만 | 28개월 |
| | | 장애인 | 36개월 |
| | 손자·손녀 | 25세 미만 | 36개월 |
| | | 25세 이상 | 24개월 |
| | | 장애인 | 36개월 |
| | 조부모 | 60세 이상 | 36개월 |
| | | 60세 미만 | 24개월 |
| | | 장애인 | 36개월 |
| | 형제자매 |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36개월 |
| | | 19세 이상 60세 미만 | 24개월 |
| | | 장애인 | 36개월 |

| | | |
|---|---|---|
| 3.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또는 부모 | | 28개월 |
| 4. 위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 24개월 |
| 5.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 1.~4.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한 경우 | 그 개월 수 |
| | 위 1.~4.에 따라 산정된 개월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그중 가장 높은 개월 수 |
| | 각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들이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유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br>① 60세 이상인 부모<br>② 25세 미만인 손자·손녀<br>③ 60세 이상인 조부모<br>④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br>⑤ 장애인 | 42개월 |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을,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평균임금은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르며,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4항).

### 유족구조금 지급방법

▪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본문).

▪ 유족이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④ 노령·장애·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4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 유족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 유족구조금 지급제한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과 가해자 사이에 다음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족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br>·직계혈족<br>·4촌 이내의 친족<br>·동거친족 | 앞의 경우(전부 지급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 |

▪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유족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br>·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br>·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br>·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br>·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br>·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br>·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유족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6항).

## 유족구조금 환수

### 유족구조금 환수

▪ 유족구조금을 받은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구조금을 받은 경우
- 유족구조금을 받은 후 지급제한사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가 발견된 경우
- 유족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3.2.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소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란?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개념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된 경우

### 장해 또는 중상해

▪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장해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5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신체상의 장해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과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6호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1.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2.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어 1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1. 또는 2.에 준하는 경우
4. 범죄피해로 인한 중증의 정신질환으로서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 구조피해자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신청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신청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 한함)
-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재심신청

▪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 기각된 경우 포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액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말함)은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제1항).

| 장해구조금 | 중상해구조금 |
| --- | --- |
| 1급: 48개월<br>2급 :44개월<br>3급: 38개월<br>4급: 34개월<br>5급: 28개월<br>6급: 24개월<br>7급: 20개월<br>8급: 14개월<br>9급: 10개월<br>10급: 5개월<br>11급 또는 12급: 4개월<br>13급 또는 14급: 3개월 | 병원급 의료기관에 속하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에 따라 해당 중상해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월 수 |

▹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을,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평균임금은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르며,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4항).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방법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본문).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④ 노령·장애·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4항 단서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제한

▪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br>·직계혈족<br>·4촌 이내의 친족<br>·동거친족 | 앞의 경우(전부 지급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 |

▪ 구조피해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br>·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br>·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br>·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br>·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br>·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br>·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

▪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6항).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환수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환수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경우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은 후 지급제한사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가 발견된 경우
-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3.2.3. 긴급구조금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소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구조금이란?

### 긴급구조금의 개념

▪ “긴급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신청 또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직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 긴급구조금 신청

### 유족의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 유족(「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이 긴급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유족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두 명 이상의 유족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표시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 구조피해자의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가 긴급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장해구조금·중상해구조금·긴급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 한함)
- 범죄피해 발생 당시 신청인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
-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3조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경우 다음의 서류
  - √ 해당 외국인이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 해당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 긴급구조금 지급

### 긴급구조금 지급액

▪ 긴급구조금 지급액의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 긴급구조금 지급

▪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 긴급구조금을 지급하며,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는 결정이 있으면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이나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받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

## 긴급구조금 환수

### 긴급구조금 환수

▪ 긴급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결정된 구조금의 금액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긴급구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8조제5항).